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연합회의 설립근거 규정〉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6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가맹본부연합회와 가맹점사업자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정부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진흥 및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보다 촉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5조의2(가맹사업자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가맹본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u> <u>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본부일 것</u> <u>2. 대표자가 가맹본부(사업자를 말한다)일 것</u> <u>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가맹점사업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u> <u>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점사업자일 것</u> <u>2. 대표자가 가맹점사업자일 것</u> <u>③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연합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연합회등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u>

현행	개정안
<신설>	립한다. ④ <u>연합회등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등의 설립허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u> ⑤ <u>연합회등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u> ⑥ <u>연합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⑦ <u>연합회등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 ⑧ <u>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연합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대신하여 협의할 수 있다.</u> <u>제15조의3(연합회등의 사업) ① 연합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하는 가맹사업 문화 정착</u> <u>2. 가맹사업자 간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발생 시 조정·중재 지원을 위</u>

현행	개정안
<신설>	<u>한 사업</u> 3. <u>가맹사업자의 창업·투자·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u> 4. <u>가맹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창업 등 국제화 촉진</u> 5. <u>가맹사업발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u> 6. <u>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u> 7. <u>가맹사업자의 구매·유통·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u> 8. <u>그 밖에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합회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u> ② <u>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다.</u> 제15조의4(지도·감독)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u>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③ <u>연합회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업</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u>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u> <u>제15조의5(행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등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등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등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u>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등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 ----- ----- -----<u>따라</u>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등-----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공정화법”이라 한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

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 「민법」 제32조에서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이를 근거로 가맹사업의 진흥 또는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법인·단체가 설립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사단법인이 활동 중에 있음.

다만, 국내 가맹사업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거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연합회에게 대리협의 권을 부여하여 가맹점사업자연합회가 특정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⑤ (생략)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보호 및 가맹본부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회원 대다수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단체가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맹본부연합회 또는 가맹점사업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기존 법인·단체들은 그 구성이나 업무,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하게 될 경우 그 사업수행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감독을 받게 되며, 그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

개정안에 따른 연합회의 권한 및 의무 등

구분	가맹본부연합회	가맹점사업자연합회
설립요건	①회원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본부, ②대표자가 가맹본부, ③산업부장관 설립허가	①회원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점사업자, ②대표자가 가맹점사업자, ③산업부장관 설립허가
운영방법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기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사업범위	-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 및 분쟁조정 - 창업·투자·경영활동 지원, 국제화 촉진 - 정책건의, 조사·연구, 구매·유통·판매 관련 공동사업 등	
지원사항	사업수행 비용 지원(정부 및 지자체)	
감독	- 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서류 제출요구, 업무·회계 보고 및 감사명령 - 산업부장관의 업무, 회계 관련 시정명령 및 해산명령	
권한	-	가맹점사업자단체 요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대리협의 가능

또한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맹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³⁾, 개정안과 같이 연합회가 직접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가맹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친목 도모,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지원, 구매·판매 관련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⁴⁾, 가맹사업자의 권익 향상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3)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가맹사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로서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경영 정보제공 인프라 부족, 해외시장 개척·진출 둔화 등을 명시하고 있음.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방향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연합회가 특정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안 제15조의2 제8항),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거래 등을 논의하는 가맹사업법 체계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⁵⁾, 가맹점사업자연합회가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대리하여 거래조건을 협의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주무 부처 및 유관 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본주와 가맹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이미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설립허가를 얻어 활동하고 있고, 브랜드 별 가맹점사업자단체도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단체의 추가 설립은 업계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상생협력 및 분쟁조정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 산업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24.12.5 시행)으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개정안 심사 시 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별도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연합회의 권한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진흥과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유관 부처 및 단체의 우려사항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461